

##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행정처분 공고

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에 해당하는 아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당사자(자격취득자)			종목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주소			
조민정	8404**	경상남도 양산시 (이하생략)	건축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자격증 대여
도규상	8004**	경상남도 창원시 (이하생략)	토목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자격증 대여
손미선	7109**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생략)	건축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자격증 대여
서치성	6704**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생략)	건축기사	자격취소	국가기술자격증 대여
김상우	6706**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생략)	토목기사	자격정지 3년 (2024. 2. 1. ~ 2027. 1. 31.)	국가기술자격증 대여(1회)

### 2. 법적근거

-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「별표18」
- (舊)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3호, (舊)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「별표18」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,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및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기 타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(☎051-660-101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